

투 자 설 명 서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 1 호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글로벌 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글로벌 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삼성 글로벌 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3.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사명 : KBC AM(KBC Asset Management LTD.)
4. 판 매 회 사 명 :

판매회사	상담가능 전화번호	판매회사	상담가능 전화번호
삼성증권(주)	1588-2323	동양종합금융증권	1588-2600
유진투자증권(주)	1588-6300	현대차IB증권	080-7733-080
현대증권(주)	1588-6611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02-3702-3114
(주)외환은행	02-729-8000	(주)우리은행	02-20202-3000
메리츠증권(주)	02-785-6611	(주)광주은행	1588-3388
(주)하나은행	1588-1111	(주)국민은행	1588-9999
메릴린치증권(주)	3707-0400	우리투자증권(주)	1544-0000
대신증권(주)	1588-4488	(주)전북은행	1588-4477
수협중앙회	1588-1515	CJ투자증권(주)	1588-7171
굿모닝 신한증권(주)	1588-0365	삼성생명보험(주)	1588-3114
키움증권(주)	1544-9000	부산은행(주)	1588-6200
(주)제주은행	1588-0079	한양증권(주)	1588-2145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07월 07일
6.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제5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신탁계약기간
2. 종류
3. 자산운용회사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5. 주된투자권유대상
6.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7. 투자목적
8. 투자전략
9. 투자위험
10. 투자대상
11. 투자제한
12. 투자실적 추이
13.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자산평가
15.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5 쪽)

1. 명 칭 :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3. 종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종류형,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5~8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법 제 140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임. -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의 100%이하를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 -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은 실시할 계획임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 등급 중 1 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따라서 고성장형 투자전략을 투자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홍의석	40 세	수석 운용역	24 개	8,200 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York Univ MBA -주식 운용(대신증권,동부화재 2년 9개월, 교보투신운용사 2년 4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8~13 쪽)

1. 수수료 및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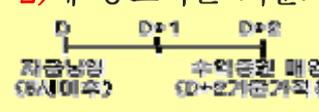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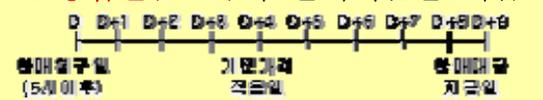
구 분		지급비율(연간, %)				
		A클래스	C1클래스	C2클래스	Cw클래스	
종 류		A클래스	C1클래스	C2클래스	Cw클래스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50억이상 매입 법인투자자	Wrap전용	
수익자에게 직 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	-	-	
	환매수수료 ¹⁾	30 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회사보수	연 1.00%	연 1.90%	연 0.40%	연 0.00%
		수탁회사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보수합계	연 1.96%	연 2.86%	연 1.36%	연 0.96%
	기타비용 ²⁾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비용비율 ³⁾		연 1.96%+ 실비	연 2.86%+ 실비	연 1.36%+ 실비	연 0.96%+ 실비	

- 주 1) 선취수수료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30 일미만, 30 일 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06.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D+8)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5 영업일(D+4)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10 영업일(D+9)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 _____
 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을 전액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운용회사의 환헷지거래에도 불구하고 헷지거래대상 통화가 환헷지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헷지거래가 전액 실행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중 ‘1. 투자전략’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 자원부족 및 효율적 분배를 위해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대상 주식은 국내·해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IPO주식 포함)과 해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등에 제한합니다.
- 삼성투신은 국내자산 및 유동성 등의 운용을 담당하며, KBC 에셋 매니지먼트는 수자원 관련 국내·해외 유가증권 등의 운용을 담당합니다.
- 해외시장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시장적)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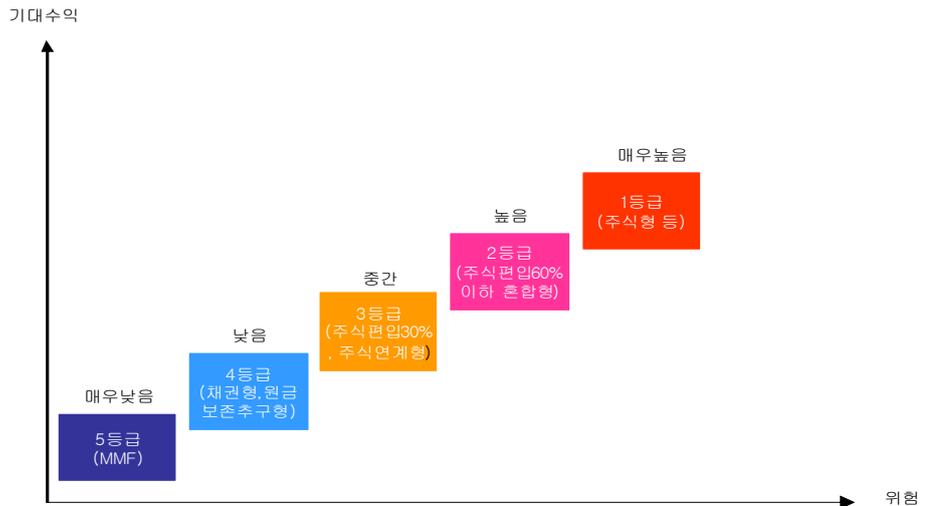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 대부분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해외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장형 투자전략을 투자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합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table border="1"> <thead> <tr> <th>판매사</th> <th>인터넷 게시주소</th> <th>판매사</th> <th>인터넷 게시주소</th> </tr> </thead> <tbody> <tr> <td>삼성증권(주)</td> <td>www.samsungfn.com</td> <td>동양종합금융증권</td> <td>www.tysec.co.kr</td> </tr> <tr> <td>유진투자증권(주)</td> <td>www.eugenefn.com</td> <td>현대차IB증권</td> <td>www.hmcib.com</td> </tr> <tr> <td>현대증권(주)</td> <td>www.youfirst.co.kr</td> <td>(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td> <td>www.scfirstbank.com</td> </tr> <tr> <td>(주)외환은행</td> <td>www.keb.co.kr</td> <td>(주)우리은행</td> <td>www.wooribank.com</td> </tr> <tr> <td>메리츠증권(주)</td> <td>www.imeritz.com</td> <td>(주)광주은행</td> <td>www.kjbank.com</td> </tr> <tr> <td>(주)하나은행</td> <td>www.hanabank.com</td> <td>(주)국민은행</td> <td>www.kbstar.com</td> </tr> <tr> <td>메릴린치증권</td> <td>-</td> <td>우리투자증권(주)</td> <td>www.wooriwm.com</td> </tr> <tr> <td>대신증권(주)</td> <td>www.daishin.co.rk</td> <td>(주)진북은행</td> <td>www.jbbank.co.kr</td> </tr> <tr> <td>수협중앙회</td> <td>www.suhyup.co.kr</td> <td>CJ투자증권(주)</td> <td>www.cjcyber.com</td> </tr> <tr> <td>굿모닝신한증권</td> <td>www.goodi.com</td> <td>삼성생명보험(주)</td> <td>www.samsunglife.com</td> </tr> <tr> <td>키움증권(주)</td> <td>www.kiwoom.com</td> <td>(주)부산은행</td> <td>www.pusanbank.co.kr</td> </tr> </tbody> </table>	판매사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사	인터넷 게시주소	삼성증권(주)	www.samsungfn.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유진투자증권(주)	www.eugenefn.com	현대차IB증권	www.hmcib.com	현대증권(주)	www.youfirst.co.kr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주)외환은행	www.keb.co.kr	(주)우리은행	www.wooribank.com	메리츠증권(주)	www.imeritz.com	(주)광주은행	www.kjbank.com	(주)하나은행	www.hanabank.com	(주)국민은행	www.kbstar.com	메릴린치증권	-	우리투자증권(주)	www.wooriwm.com	대신증권(주)	www.daishin.co.rk	(주)진북은행	www.jb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CJ투자증권(주)	www.cjcyber.com	굿모닝신한증권	www.goodi.com	삼성생명보험(주)	www.samsunglife.com	키움증권(주)	www.kiwoom.com	(주)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판매사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사	인터넷 게시주소																																													
	삼성증권(주)	www.samsungfn.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유진투자증권(주)	www.eugenefn.com	현대차IB증권	www.hmcib.com																																													
	현대증권(주)	www.youfirst.co.kr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주)외환은행	www.keb.co.kr	(주)우리은행	www.wooribank.com																																													
	메리츠증권(주)	www.imeritz.com	(주)광주은행	www.kjbank.com																																													
	(주)하나은행	www.hanabank.com	(주)국민은행	www.kbstar.com																																													
	메릴린치증권	-	우리투자증권(주)	www.wooriwm.com																																													
	대신증권(주)	www.daishin.co.rk	(주)진북은행	www.jb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CJ투자증권(주)	www.cjcyber.com																																													
	굿모닝신한증권	www.goodi.com	삼성생명보험(주)	www.samsunglife.com																																													
키움증권(주)	www.kiwoom.com	(주)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주)제주은행	www.e-jejuban.com	한양증권(주)	www.hygood.co.kr
---------	-------------------	---------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홍의석	수석 운용역	- New York Univ MBA -주식 운용(대신증권,동부화재 2년 9개월, 교보투신운용사 2년 4개월)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추이

- 가.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A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매입시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2)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C1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3)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C2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4)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Cw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판매수수료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A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¹⁾	실비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 · 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96%+ 실비	

(2)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C1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9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¹⁾	실비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 · 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86%+ 실비	

(3)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C2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	최초 설정일로부터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0%	매 3월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¹⁾	실비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36%+ 실비	

(4)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 Cw클래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¹⁾	실비	사유 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96%+ 실비	

註)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 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실제 운용기간이 1년미만으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

1. 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의 관련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투자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CLASS A보수	193,103	481,516	799,492	1,744,424
	선취수수료	최초 가입금액 1000만원/1%= 10만원			
	CLASS C1보수	286,000	901,615	1,580,331	3,597,277
	CLASS C2보수	136,000	428,740	751,486	1,710,593
	CLASS Cw보수	96,000	302,640	530,460	1,207,477

-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사항>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율에 관한 사항은 이 투자설명서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 (1)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
- (2)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범위

- 외국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Mutual Fund, Reits, ETF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단,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가 손실된 경우에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펀드의 비과세에 대한 적용기간은 법 시행일(2007년06월0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국외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입가격 및 매입 방법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 공고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 합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환매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환매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	제4영업일	제5영업일	...	제9영업일	제10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5시] 경과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주1)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 합니다.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1)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A클래스 수익증권
 - : 3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2)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 1 호- C1 클래스 수익증권
 - : 3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3)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 1 호- C2 클래스 수익증권
 - : 3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4)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 1 호- Cw 클래스 수익증권
 - : 3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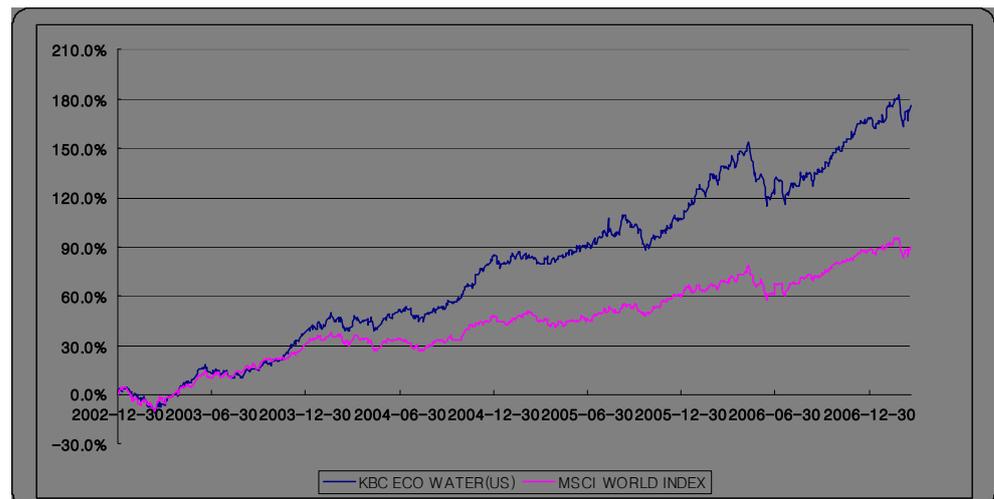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100%이하를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Water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참고1 : 수자원 및 물관련 투자 부분]

Water/Wastewater Trea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 및 하수 처리 관련 산업 Market leader: Veolia, Suez, Siemens, RWE, Aqua America
Industrial Water Trea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전력, 제지, 화학등에 사용되는 Ultra-Pure water 정제 기술 관련 산업 Market leader: Nalco, GE, ITT, Veolia, RWE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관련 산업과 관련된 기반 산업 및 산업재 관련 산업 Market leader: Mueller, Tyco, Kupferle Foundry co. Watts
펌프/ 밸브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펌프 및 밸브 관련 기초 소재 관련 산업 Market leader: Flowserve 4.2%, Grundfos 4.2%, Ebara 3.9% / Tyco 3.1%, Flowserve 1.8%, Emerson 1.8%, Dresser 1.3%
Others (Filtration/Automation System/Engineering & Consulting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화기술 / 수질 처리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제공 / 산업재 설비 관련 설계-재무-설비 조정관련 산업 Market leader: Pentair, GE, Cuno / ABB, Emerson, GE, Siemens / Tyco, Tetra Tech, CH2M Hill, Black & Veatch
Residential wa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정수 시설 및 UV, 멤브레인 정화 설비 제공 산업 Market leader: Cuno, Culligan, EcoWater, Pentair
Water Te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검사 및 오염 관리를 위한 Solution 제공 산업 Market leader: Danaher 18%, Thermo Electron 5%

[참고2 : KBC AM의 ECO WATER FUND 성과 추이]



※ 해외위탁회사인 KBC AM의 WATER FUND의 누적 운용 수익률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간 : 2002. 12. 30 ~ 2007. 3. 20

※ 모자형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설명서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송환 불능위험	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운용회사의 환헷지거래에도 불구하고 헷지거래 대상 통화가 환헷지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헷지거래가 전액 실행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 상품의 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기간이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 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 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100%이하	○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원활한 환했지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15%이하 (위탁증거금기준)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이하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이하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단,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만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④ 및 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파생상품 투자	법제2조제8호와 제9호에서 정의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모자형의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설명서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요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장의파생상품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의 거래	<input type="checkbox"/>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input type="checkbox"/>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투자신탁 제1호 - **A클래스**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2)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투자신탁 제1호 - **C1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3)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투자신탁 제1호 - **C2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투자금액이 50 억이상인 법인 투자자
- (4) 삼성 글로벌 Water 주식종류형투자신탁 제1호 - **Cw 클래스**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

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전일)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상기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3)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3층
 (02-3774-7600)

회 사 연 혁

일자	연혁
1998. 09	삼성생명투신운용 설립 (납입자본금 300억)
1999.12	舊삼성투신운용 흡수 합병 (납입자본금 632억, 수탁고 18.9조)
2000. 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삼성생명투신운용에서 삼성투신운용으로 상호변경
2001. 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11	연기금 투자플 주간 운용사 선정
2002.10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04	KODEX Q ETF 코스닥시장 등록
10	KODEX KODI ETF 증권거래소 상장
2005.04	아시아채권기금(ABF)의 국내운용사로 단독 선정
10	KODEX KRX100 증권거래소 상장
12	KODEX 스타 코스닥 상장
2006.12	관리자산 73조원

2. 주요업무 및 업무의 위탁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 해외위탁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등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약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약관 시행일 현재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KBC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7.3.31	'06.3.31	항 목	'07.3.31	'06.3.31
유동자산	151,655	117,291	영업수익	75,377	64,794
고정자산	27,909	37,797	영업비용	40,130	33,536
자산총계	179,564	155,088	영업이익	35,248	31,258
유동부채	25,050	7,437	영업외수익	1,791	128
고정부채	906	2,301	영업외비용	29	25
부채총계	25,956	9,738	경상이익	37,010	31,361
자본금	93,180	93,18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60,428	52,170	특별손실	-	-
자본조정	-	-	세전순이익	37,010	31,361
자본총계	153,608	145,350	당기순이익	26,894	22,601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04월 30일 기준,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33,642	17,656	43,884	57,044	14,499	-	11,994	-	178,709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 명	나이 (년생)	직 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홍의석	1967	수석 운용역	24 개	8,200 개	- 97.07~99.03 대신증권 - 99.10~01.01 동부화재 - 01.01~03.05 교보투자신탁운 용 운용역 - 03.07~05.10 세종증권	해외투자 1 팀 운용

II.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KBC 에셋 매니지먼트

2. 주요주주: KBC GROUP NV 가 45%,
KBC BANK가 55% 소유

(※ KBC의 K 는 Kredietbank에서, B는 ABB (insurance co), C 는 CERA
(상호신용은행)에서 따온 약자로 1989년 3개사가 합병을 통하여 생성된 벨기에
의 규모 2위 은행입니다.)

I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삼성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 : 1588-2323)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92. 11	삼성증권 출범
1996. 11	수익증권 위탁판매 실시
1999. 02	IMF이후 증권업계 최초 신용평가 A등급 회복
2000. 12	삼성투자자산탁증권과 합병
2002. 11	Asia Money誌 Best Research Top 5 선정
2004. 11	제 1회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대상'수상
2006. 03	'05 하반기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증권부문 1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8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 : 1588-26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2. 6	회사설립
1988. 01	기업공개 (상장)
1996. 03	업계 최초 수익증권판매 실시
2000. 12	업계 최초 외평채 판매 개시 및 2000년 판매실적 1위
2001. 11	동양증권 - 동양현대증권 합병,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출범

<유진투자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3-9
(☎ : 1588-63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54.05.12	서울증권(주) 설립
1999.06.03	한일투자자산탁운용(주)인수
2001.08.01	기업집단 대립에서 계열 분리
2002.12.17	제일선물(주) 인수

<현대차IB증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동화빌딩
(☎: 080-7733-08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96.09.01	납입자본금 550억원
2000.04.03	업계 최초 시스템 트레이딩 지점 개설
2000.06.16	모닝스타코리아 설립
2006.05.26	주식배당, 자본금565억
2008.04.01	현대차IB증권으로 상호변경

<현대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현대증권빌딩
(☎ : 1588-6611)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2년06월	증권업 허가
1977년	현대그룹 지분참여
1986년	현대증권(주)로 상호 변경
2005년12월	퇴직연금업 인가
2006년02월	신용등급 'A'로 상향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 : 02-3702-3114)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29. 7. 1	조선저축은행으로 창립
1950. 5.20	한국저축은행으로 행명 변경
1958.12. 1	제일은행으로 행명 변경
2000.01.20	해외투자 유치
2005.09.12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주)외환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 02-729-80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7. 1. 30	한국외환은행 창립
1989. 12. 30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공포로 특수은행에서
1999. 1. 1	일반은행으로 전환
2003. 10. 30	한외종합금융(주) 합병 자본금 31,946억으로 증가

<(주)우리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 : 02-2020-3000)

나. 연 혁

- 납입 자본금: 31,798억원 (2004년 6월말)
- 부실채권 약 4조원 매각
- 주식예탁증서 10억불 발행
- 아시아 대표 초우량 슈퍼은행 발표
- BIS비율: 12.07%(2004년 6월말 기준)
- 신용등급: AAA(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메리츠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메리츠증권
(☎ : 02-785-6611)

나. 연 혁

일 자	연 혁
-----	-----

1973. 2	한일증권 설립
1990.10	한진투자증권(주)로 상호변경
1996. 7	서울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0. 3	메리츠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4	한진그룹에서부터 계열 분리
2001. 8	투자자문업 허가 취득
2003.11	투자일임업 허가 취득

<(주)광주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 : 062-239-50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8.09.17	창립
1969.01.01	광주시금고 업무취급 개시
1999.02.27	전라남도 금고 업무취급 개시
2001.03.27	우리금융지주(주)자회사로 편입
2005.12.29	자본금 2,204억원으로 증자

<(주)하나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 : 062-239-50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71.0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3.07	은행으로 전환
1998.10	충청하나은행 출범
1999.01	보람은행과 합병- 하나은행 출범

<(주)국민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중구 남대문 2가9-1 (☎ : 1588-90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2001. 11. 01	합병 국민은행 출범

<메릴린치증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태평로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 : 3707-0400)

- 나. 연 혁
- 설립일: 1992. 7. 8
 - 자본금 : 222억원
 - 판매회사 등록 : 2000.9.22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우리투자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서관 28층
(☎ : 1544-0000)

- 나. 연혁
- 설 립 일 : 1969 . 1. 16

- 자본금 : 7,868억원(2005.4)
- 종업원수 : 2,540명(2005.4)
- 다. 판매회사 등록 : 1999년 1월 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대신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빌딩
(☎ : 1588-4488)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2.07.27	삼라증권 설립
1968.07.08	중보증권으로 상호변경
1975.04.22	대신증권으로 상호변경
1996.07.12	대신투자자문 상호변경(변경후 : 대신투신운용)
2003.07.21	배당지수(KODI)구성종목에 선정
2005.11.09	제2회 대한민국 증권대상 고객만족부문 최우수상 수상

<(주)전북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 1588-4477)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9. 12. 10	주식회사 전북은행 창립
2000. 01. 04	금융기관 최초로 다산금융상 은행부문 대상 수상
2003. 07. 15	사업부제 중심의 직제 개편/전략사업본부 신설
2003. 12. 31	창립이래 최대의 경영성과 시현

<수협중앙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1-6 (☎ :02-2240-2114)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2.04.01	중앙회 및 회원조합 동시발족
1963.05.01	여신업무 개시
1988.02.29	신탁업무 개시
2003.03.03	수협은행 윤리강령 제정
2004.09.08	수협비전 선포식

<CJ투자증권>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 02-318-9111)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89.12.01	영업개시
1997.09.21	최대주주 변경(CJ그룹으로 편입)
1999.01.09	증권회사로 전환(제일투자신탁증권(주)로 상호 변경)
2004.08.31	상호변경(제일투자증권->CJ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02-729-80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	-----

1973.04	효성증권 설립
1983.12	상호변경(효성증권 -> 쌍용투자증권)
1999.05	쌍용투자증권에서 굿모닝증권으로 출발
2001.03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04	굿모닝증권-신하증권 합병 발표
2002.05	사명 굿모닝신한증권으로 확정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2004.12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교환
2007.01	2001년 한경 고객감동경영대상 금융부분 대상 수상

<삼성생명보험(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 1588-3114)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57. 5. 5	동방생명창립
1963. 7.13	삼성그룹 계열사 편입
1989. 7. 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8. 9.15	삼성생명투신운용 설립
2003. 2.14	삼성생명 공유가치(Shared value)선포
2003. 9. 5	금감원 주관 민원평가 3년 연속1위(생보부문)

<키움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3-7 유화증권빌딩 14층
 (☎ :02-3787-50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2000.05.04	증권투자서비스 개시
2003.10.29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자회사 편입
2004.05.27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
2005.08.10	자본금 변경(613억원)

<부산은행(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 : 1588-6200)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7.10.10	회사창립
1999.06.30	자본금 4,752억원으로 증자
2002.08.28	중국공상은행과 포괄적업무제휴 조인
2003.11.15	부산광역시 금고은행으로 재지정
2006.12.13	제11회 중소기업금융지원상 기관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주)제주은행> 가. 주소 및 연락처 :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 1588-0079)
 나. 연 혁

일 자	연 혁

1969.09.19	제주은행 창립
2001.01.11	신한은행과 경영자문계약 체결
2002.05.10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2007.02.27	해럴드경제 “2007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수상

<한양증권(주)>

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 1588-2145)

나. 연 령

일 자	연 령
1954.03.27	회사설립
1962.11.01	증권업면허 인가
1995.01.13	유상증자 100억원(증자후 자본금 662억원)
2006.03.27	창립 50주년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 판매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V.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1588-1770)
회사연혁	1981. 부산지점 개설 1984. 서울지점 개설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 지점 개설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해외보관대리인(모펀드)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신탁약관 제36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신탁약관 제36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기타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

V. 일반사무관리회사

해당사항 없음

VI.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명 및 주소 등

회 사 명	KIS 채권평가(주)	한국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건물 4층 (Tel : 3215-149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el : 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 6층 (Tel : 398-3900)
회사연혁	2000.06.20 설립	2000.05.29 설립	2000.06 설립

□ 연 혁

KIS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6. 20	설립
2000. 06. 3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01. 01	한경-KIS 채권지수 발표
2002. 07. 02	증권업협회-KIS-한경 기업어음지수 개발

한국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5. 29	설립
2000. 07. 0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2. 05.	벤처기업 선정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나이스채권평가(주)

일 자	연 혁
2000. 06	설립
2000. 0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2001. 10	나이스채권지수(NICE Bond Index)발표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VI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 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7)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운용회사(www.samsungfund.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판매사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사	인터넷 게시주소
삼성증권(주)	www.samsungfn.com	동양종합금융증권	www.tysec.co.kr
유진투자증권(주)	www.eugenefn.com	현대차IB증권	www.hmcib.com
현대증권(주)	www.youfirst.co.kr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주)외환은행	www.keb.co.kr	(주)우리은행	www.wooribank.com
메리츠증권(주)	www.imeritz.com	(주)광주은행	www.kjbank.com
(주)하나은행	www.hanabank.com	(주)국민은행	www.kbstar.com
메릴린치증권	-	우리투자증권(주)	www.wooriwm.com
대신증권(주)	www.daishin.co.rk	(주)전북은행	www.jb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CJ투자증권(주)	www.cjcyber.com
굿모닝신한증권	www.goodi.com	삼성생명보험(주)	www.samsunglife.com
키움증권(주)	www.kiwoom.com	부산은행(주)	www.pusanbank.co.kr
(주)제주은행	www.e-jejubak.com	한양증권(주)	www.hygood.co.kr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5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삼성 글로벌Water주식모투자신탁

- 1.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2. 종류 주식형, 추가형, 모자형의 모투자신탁
- 3. 자산운용회사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4.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년04월 일 설정
- 5. 주된투자권유대상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만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 6.모투자신탁 KBC 에셋 매니지먼트
- 해외위탁자산운용사 다만,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140조에 의거한 모자형간접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증권등에 간접투자하게 되며, 이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삼성글로벌Water주식모투자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제1호		100%이하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제2호		100%이하
삼성 글로벌 Water 30채권혼합종류형자투자제1호		30%이하
삼성 글로벌 Water 30채권혼합종류형자투자제2호		30%이하
삼성 퇴직연금금글로벌Water주식자투자신탁 제1호		60%이상
삼성 퇴직연금금글로벌Water주식자투자신탁 제2호		60%이상
삼성 퇴직연금금글로벌Water40혼합자투자 제1호		40%이하
삼성 퇴직연금금글로벌Water40혼합자투자 제2호		4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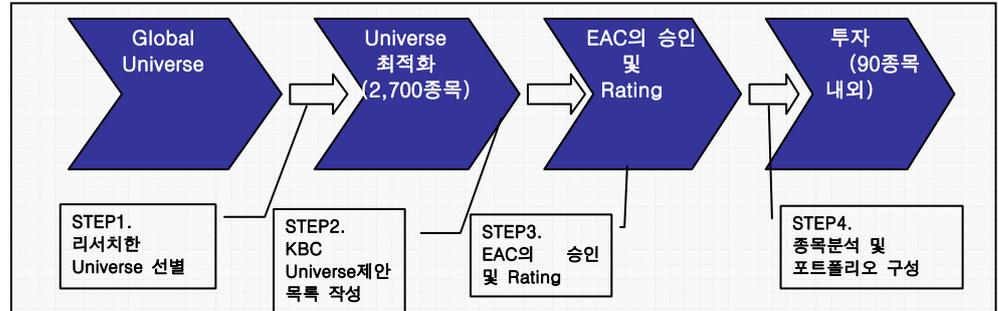
- 7.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8. 투자전략 **기본 운용전략**

(1) 자원부족 및 효율적 분배를 위해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주식 등”에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고위험 대비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대상 주식은 국내·해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IPO주식 포함)과 해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등에 제한합니다.

- (2) 삼성투신은 국내자산 및 유동성 등의 운용을 담당하며, KBC 에셋 매니지먼트는 수자원 관련 국내·해외 유가증권 등의 운용을 담당합니다.
- (3) 해외시장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한 국가에 집중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시장적)위험을 감소시키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 운용 Process



* EAC(Environmental Advisory Committee): 환경 자문 위원회

STEP1. 리서치한 Universe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C AM 자체에서 구성한 투자 Universe 중에서 투자 종목 선별 • KBC AM 자체 Universe중에서 EIRIS가 추천한 종목을 선택하여 2,700 종목 내외의 Universe를 구성
STEP2. KBC Universe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매니저는 Universe중에서 Water Universe를 재구성 • 제안 사유 및 분석서를 작성하여 EAC에 제출
STEP3. EAC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C에서는 Water 정의에 맞는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재구성 • 별도로 관련 부문의 최고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함
STEP4. 종목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의 KBC 주식 애널리스트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Dublin의 펀드 매니저가 추가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9.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송환	일부 나라는 펀드의 배당소득,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또는 유가증

불능위험	권의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증권시장의 경우 제도외 규모를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급격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환매기간이 국내투자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 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당 투자 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10.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해외주식	60%이상	○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수자원 및 물관련 업종에 속하는 <u>외국법인</u> 등이 발행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② 국내주식		○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수자원 및 물관련 업종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③	유가증권 예탁증서	40% 이하	○ 증권거래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국내법인과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GDR 과 ADR 을 포함한다)(이하 “DR”이라 한다)
④	국내채권	40% 이하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제외)
⑤	어음	40% 이하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신용등급 A2- 이상)
⑥	수익증권등	5% 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 이하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20% 이하	○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수익증권에의 투자
⑦	투자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기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국내주식, 국내채권, 국내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외화표시자산으로서 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함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1.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이용하는 행위	

<p>동일종목 투자</p>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및 어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채무증서 또는 어음,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다음 1월간 적용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투자한도 초과</p>	<p>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p>	
<p>후순위채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12. 투자실적 추이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13.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등의 업무를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

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1.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2.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투자증권등”의 매매수수료
3.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투자증권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4.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5.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6.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7.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율에 관한 사항>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합계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제1호	A 클래스	0.90	1.00	0.06	1.96
	C1클래스	0.90	1.90	0.06	2.86
	C2클래스	0.90	0.40	0.06	1.36
	Cw클래스	0.90	0.00	0.06	0.96
삼성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제2호	A 클래스	0.90	1.00	0.06	1.96
	C1클래스	0.90	1.90	0.06	2.86
	C2클래스	0.90	0.40	0.06	1.36
	Cw클래스	0.90	0.00	0.06	0.96
삼성 글로벌 Water 30채권 혼합종류형자투자제1호	A클래스	0.51	0.69	0.06	1.26
	C클래스	0.51	1.19	0.06	1.76
	Cw클래스	0.51	0.00	0.06	0.57
삼성 글로벌 Water 30채권 혼합종류형자투자제2호	A클래스	0.51	0.69	0.06	1.26
	C클래스	0.51	1.19	0.06	1.76
	Cw클래스	0.51	0.00	0.06	0.57
삼성 퇴직연금글로벌 Water주식자투자 제1호	-	0.70	0.90	0.04	1.64
삼성 퇴직연금글로벌 Water주식자투자 제2호	-	0.70	0.90	0.04	1.64
삼성 퇴직연금글로벌 Water40혼합자투자 제1호	-	0.45	0.75	0.03	1.23
삼성 퇴직연금글로벌 Water40혼합자투자 제2호	-	0.45	0.75	0.03	1.23

14.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장의파생상품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5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권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최초매수시 상담 및 고객확인란

계좌번호		매수금액	금	원정 (₩)
펀드명				
상품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생계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투자여부	<input type="checkbox"/> 찬성 <input type="checkbox"/> 반대	
저축형태	<input type="checkbox"/> 임의식 <input type="checkbox"/> 거치식 <input type="checkbox"/> 적립식 <input type="checkbox"/> 자유적립식	저기축기간 ()개월	저금축액	₩
펀드유형	<input type="checkbox"/> MMF <input type="checkbox"/> 채권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형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혼합형	매수결제 <input type="checkbox"/> 당일 <input type="checkbox"/> 익일	환매결제	<input type="checkbox"/> 당일 <input type="checkbox"/> 3일 <input type="checkbox"/> 4일 기타()일
기타사항	<i>연금저축, 부가서비스, 보험서비스, 웰스플랜 상품선택사항 등 기타사항작성</i>			
투자설명서 통보처 (유선신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교부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우편자택 <input type="checkbox"/> 우편직장	처리시각	고객연락처	

투자신탁 명칭 : 삼성 글로벌Water 주식종류형투자신탁 제1호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관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에게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 (그 주요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삼성 글로벌Water주식종류형자투자신탁 제1호

판 매 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삼성생명보험(주) _____ 지점

판매직원: 소속: _____ 직위: _____ 사번: _____ 성명: _____ (인/서명)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께서 취득권유인으로부터 취득권유를 받은 경우 아래 고지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판매직원 및 취득권유인의 명함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사항

- 上記 취득권유인은 삼성생명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취득권유인은 투자자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 이외에 업무(간접투자증권매입 계약의 체결, 수익증권거래통장 개설, 자금의 수납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취득권유인이 취득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삼성생명이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은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간접투자증권의 매입계약의 체결 및 자금의 납입은 회사의 본·지점을 통하여야 합니다.